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페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	27,756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29,709

2. 재건축·재개발 공사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페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6,374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58,522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총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67,377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불연성, 가연성, 페보드류·페판넬)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66,193
		페보드류·페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페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페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페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페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170,279

[해설]

-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021.12.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1.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8-2-15 대 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페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3.1.1부터 적용)